

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심사 보고서

2005. 1. 14(금)
관광건설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(2005. 1. 13)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)

가. 제안이유

○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안전
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위원회 기능(안 제2조)

-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, 총괄, 조정 협의 등

○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(도지사)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

○ 위원의 임기(안 제4조)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

○ 실무위원회(안 제7조)

-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

○ 조사·연구(안 제8조)

- 관계전문가, 기관, 단체 등에 조사·연구 의뢰
- 조사·연구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내 지원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 일 수)
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
- 2004. 6. 1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(2004. 6. 18)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.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정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
- 제3조(위원회의 구성)제1항 제2호의 “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”을 “충청북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

방본부장”으로 제6호 “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을 “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으로 제7호 “재난 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”을 “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”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3조(운영세칙)를 다른 조례와 같이 조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“제13조(운영세칙)”를 “제13조(운영규정)”으로 함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8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
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
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5. 1. 13

제 안 자 : 송은섭 의원외

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3조(운영세칙)를 다른 조례와 같이 조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“제13조(운영세칙)”를 “제13조(운영규정)”으로 함

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안 “제13조(운영세칙)”를 “제13조(운영규정)”으로 함

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13조(운영세칙) ① (생략)	제13조(운영규정) ① (생략)

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안전관리계획의 심의
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
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5.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
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

1. 행정부지사
2.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
3.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
4. 충청북도 지역 관할사단장
5. 충청북도 교육감
6.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
(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)
7.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
8.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
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,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
제4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 및 의사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7조 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·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·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.

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 (조사·연구)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·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게 연구·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(관계기관의 협조요청)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, 관계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수당)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 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, 장소,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,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2조 (회의결과의 통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·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빨취

□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하에 시·도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소속하에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(이하 “시·군·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도위원회 및 시·군·구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④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조(지역위원회의 기능)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.

1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
2.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
3.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)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
4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
5.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